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9. 2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15일, 이학래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9월 2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이학래 의원

가. 제안이유

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 공학 기기·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, 방법,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·운영 등 기본원칙
(안 제4조)
-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범위 (안 제5조)
-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절차(안 제6조)
- 장애인공무원 지원방법(안 제7조)
-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조례안은

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 공학기기·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, 방법,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상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우리 구의 2017년도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중증 20명, 경증 49명 등 합 69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5번째로 장애인수가 많고 앞으로, 장애인공무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

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마포구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 및 맞춤형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무능률을 향상 시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